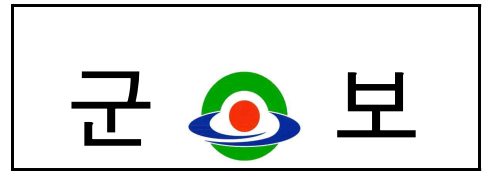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22호 2023. 2. 6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21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6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수시로 지역 물가 동향을 파악 및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비상설화(안 제3조, 제5조, 제6조)

-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
- 임기 및 개최 빈도 관련 사항 삭제하여 운영 규정 유연화

나.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(제7조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새마을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minjee91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

3) 팩스 : 054-650-609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(전화: 054-650-6853)에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
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
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,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

련 공무원,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지역경제담당”을 “새마을경제팀장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”를 “회의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지역단 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·조정한다.	제2조(기능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기타</u> ,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	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
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·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기타</u>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업요금	9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 명 이내로 <u>구성한다</u> .	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며, 위촉직 위</u> <u>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</u> <u>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</u> <u>야 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</u> <u>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</u>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매분기 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경제과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,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

산한다.

<삭제>

제6조(운영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,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<삭제>

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
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
따로 정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 략)

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되고
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
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의견청취) 위원회 및 실무

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
공무원,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
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심의안건 제출) ① 제2조

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
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
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
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
한다.

② (생 략)

제11조(수당·여비) 위원회 및 실

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
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
안에서 「예천군 각종위원회 실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 새마을경제팀장-----

-----.

<삭 제>

제10조(심의안건 제출) ① -----

----- 회의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수당·여비) 위원회-----

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
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
있다.

---.